
RCEP 지식재산 협정문에 관한 소고*

—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

최교숙**

- I. 들어가며
- II. RCEP 지식재산 협정문의 타결 및 특징
 - 1. RCEP 지식재산 협상의 타결과정과 의의
 - 2. RCEP 산업재산권 조항에 포함된 협상국의 다양한 입장차
 - 3. RCEP 산업재산권 협상에서 CPTPP 협정문의 차용
- III. 산업재산권 관련 RCEP 조항과 의의
 - 1. 상표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 2. 특허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 3. 디자인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 4. 소결
- IV. 기타 RCEP 조항의 의의
 - 1.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 2. 제도규정 장의 지식재산권 위원회 조항의 의의
- V. 마치며

* 이 논문은 필자가 RCEP 관련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허청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사무관.

초 록

2013년 협상을 시작하여 54회의 공식협상,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2020년 타결된 RCEP은 한국 최초 다자간 FTA로서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 등 분야를 포함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문구 차이, 정책적 차이, 정책상 민감한 것으로 조항을 구분·논의하고, 83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규정은 10개 상표조항, 7개 지리적 표시(GI) 조항, 12개 특허조항, 4개 디자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CPTPP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4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RCEP은 CPTPP와 유사·동일한 수준의 조항(예: 소리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상표권의 권리, 니스분류, 복합명사GI, GI보호개시일, 18개월 공개, 유전자원 관련 조항 등),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조항(예: 악의적 상표출원, 복수 상품군 일출원, GI와 상표관계,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우선 심사, 디자인에서 인터넷 공지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한·ASEAN, 한·베, 한·중 FTA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RCEP 협정문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등의 보호 제도를 이식하고, 다른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우리가 각국 국내법·정책의 차이, 선호하는 문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협정문과 협상과정의 분석은 향후 협상·협력을 위한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주제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산업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특허, 상표, 디자인

I. 들어가며

2019년 9월 27일 베트남 다낭 아리야나 컨벤션센터(Ariyana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제28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공식 협상(Trade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TNC)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관련 조항을 끝으로 산업재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지식재산 협정문(Chapter)¹⁾이 합의되었다.

2019년 9월 2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그룹, AFP²⁾(ASEAN Free Trade Agreement Partners) 그룹 각각의 논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제28차 회의는, 16개 개별국의 국내법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해석을 명확하고 유사하게 하는, TRIPs보다 높은 수준(이하 “TRIPs 플러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83개 조항의 합의를 이끌었다. 의장은 “Impossible could be possible”이라는 말과 함께 전체 조항의 합의를 벅차게 선언하였다.

‘ASEAN’과 ‘이미 ASEAN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맺은 AFP’ 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구상은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고,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RCEP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3년 5월 브루나이 제1차 공식협상 후 31차례의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

1) 지식재산 협정문은 2019년 9월 합의되었으며, RCEP은 전체 20개 장(Chapter)이 합의되어야 하는 GATT의 일괄타결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을 따라, 2020년 타결되었다.

2) 한·ASEAN FTA(2007년 발효), ASEAN·호주·뉴질랜드 FTA(2010년 호주 발효), 일·ASE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2008년 12월 발효), 중국·ASEAN FTA(2002년 Framework 서명).

례 정상회의, 추가 회 기간(Intersession) 협상 및 별도 세션(예: Geographical Indication session 등) 등 긴 여정이었다.

RCEP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최초의 다자간 FTA로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뿐 아니라 지식재산, 경쟁, 경제 및 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 20개³⁾ 장으로 구성되었다. 다자간 협상은 각 협상국의 상황, 이익, 개별 협상국과의 관계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양자 간 협상보다 훨씬 어렵다.

RCEP 지식재산 협정문은 총 83개 조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무려 68개의 주석을 사용하였는데, 주석의 개수로부터 지식재산 협정문을 구성함에 있어 협상국 간 제도의 차이 또는 용어에 대한 이해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⁴⁾

각국의 국내법, 정책 등의 차이로 인한 협상의 곤란함은 지식재산 장애만 한정된 것이 아닌데, 이는 “RCEP 당사국⁵⁾은 협정을 통하여 다음에 나열하는 기대 가치, 추구 목표를 가지고, 당사국 간의 상이한 개발수준 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RCEP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협상국은 서문⁶⁾에 밝힌 바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3)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제9장 자연인의 이동, 제10장 투자, 제11장,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협력, 제16장 정부 조달, 제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규정.

4) 한-EU의 경우 69개 조로 구성된 지식재산 협정문에 총 28개의 주석만 포함되었다.

5)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16개국이 RCEP 협상국이고, 인도가 2020년 탈퇴를 결정하면서 당사국은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으로 15개국이다.

6) [RCEP의 서문] ① 기대가치: 역내 경제통합을 확대 및 심화, 경제성장 및 공평한 경제 발전, 경제협력 증진, 고용기회 확대, 생활수준 제고, 복지 향상, ② 추구목표: 역내 및 세계 공급망에 참여,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칙 정립, ③ 고려사항: 상이한 개발수준, 국가 간 차등대우 등 유연성의 필요성,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연성, 최빈개발도상국이 본 협정을 활용하도록 참여 증가를 촉진시킬 필요성.

지식재산 분야도 제13절(제11.78조~제11.83조) 경과기간 및 기술지원 부분에서 각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단계를 인정하고, 각국의 경과기간을 규정하였다. RCEP은 ASEAN 국가 중 6개, 非ASEAN 국가 중 3개국⁷⁾이 비준을 거친 후 발효되지만, 발효된 후에도 제13절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일부 최빈개발도상국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조항별로 이행시기를 지연할 수도 있다. 이렇듯 협정문 곳곳에서는 RCEP의 기대 가치와 추구 목표를 고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한·칠레 FTA 협상을 시작으로 21개 FTA를 발효 또는 서명·타결하였고, 지금도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중·일 FTA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5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5, 이하 IP5⁷⁾)으로 IP5 외에도 WIPO 및 그 회원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상대국의 국내법·제도,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한 정보는 협상이나 특허심사협력,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적정기술 보급 등의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나, 이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로 최근 진행된 협정문,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거나 공개된 일부 문서로부터 유추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 다자간 진행된 RCEP의 산업재산권 등의 협정문과 그 협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RCEP 회원국 또는 RCEP 회원국과 유사한 국내 환경을 가진 국가와 개별 FTA를 추진하거나 그 외 협력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

II. RCEP 지식재산 협정문의 타결 및 특징

한국, 인도, 일본, 중국이 ASEAN과 기체결한 FTA에는 지식재산 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간의 FTA에는 13장⁸⁾에 지식재산

7)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하였다.

8) 목적(제1조), 정의(제2조), TRIPs 의무(제3조), 내국민대우(제4조), 저작권(제5조), 소

이 포함되었으나, 12개 조항으로 저작권(제5조), 소프트웨어의 정부사용(제6조), 상표(제7조) 정도만 규정하고 특허나 디자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상표 조항은 니스분류 사용, 실체 및 방식심사를 통한 양질의 상표권 보장, TRIPs와 국내법에 따른 상표 보호, 상표제도를 통한 지리적 표시 보호부여 정도만 명시하였을 뿐 세부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RCEP 지식재산권 장은 13개절, 83개 조항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즉 이미 ASEAN과 개별 FTA를 체결한 AFP 간의 RCEP은 기존 ASEAN과 개별 AFP 간의 FTA에 비하여 세부적이고 강한 보호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지식재산 장을 포함함으로써, RCEP 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RCEP의 산업재산 조항은 소리상표,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특허출원 18개월 후 공개, 부분디자인 등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⁹⁾), 미·중 무역합의, USMCA 등 최근 협정에서 이슈가 된 높은 수준의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 RCEP 협상국 간 규정보다 높고 세부적인 규정으로 최근 다자간 협정의 조항도 포함한 RCEP 협상과정과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1. RCEP 지식재산 협상의 타결과정과 의의

(1) 전체 협상의 Deal-Breaker로서 지식재산 분과

지식재산 장이 최종 합의된 2019년 9월까지의 쏠 협상과정에는 인도가 당사국에 포함되었다. 즉 모든 지식재산 규정의 협상은 16개국 간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16개국 국내법 현황, 주력 산업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의 정부사용(제6조), 상표(제7조) 협력(제9조), 투명성 제고(제10조), 지식재산권 위원회(제12조).

9) 기 타결(2015년 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에서 미국이 탈퇴(2017년 1월)하면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하여 발효(2018년 12월)되었고, CPTPP 당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이다.

좀처럼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 곤란하였다. 일부 학계에서는 회원국 간 갈등으로 인해 RCEP에서 지식재산 협정문이 제외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¹⁰⁾ 2018년 말, 제24차 공식협상 시까지 지식재산 조항의 약 15% 정도만 합의된 상태였다. 심지어 협상 막바지에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관련 조항, 국제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조항(제11.34조, 제11.35조) 등 일부 지식재산 조항의 타결에 난항을 겪으며 지식재산 장이 전체 협상의 Deal-breaker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2019년 한 해에만 총 6회-제25차 공식협상(2월 인도네시아), 지리적 표시 특별 세션(4월 싱가포르), 제5차 회 기간(5월 태국), 제26차 공식협상(6월 호주), 제27차 공식협상(7월 중국), 제28차 공식협상(9월 베트남)-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83개 지식재산 조항의 약 85%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협상 초기 RCEP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지식재산 협정문을 (i) 문구의 차이(Drafting/ Technical)가 존재하는 조항, (ii) 정책적 차이(Policy Divergence)가 있는 조항, (iii) 정책적으로 민감(Policy Sensitive)한 조항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분류 (i)에는 제11.2조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대표적이며, 분류 (ii)에는 제11.26조 유명상표의 보호, 제11.27조 악의적 상표, 분류 (iii)에는 제11.53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조항 등이 속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합의점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 (i)의 조항을 우선 협상하였다. 다자간 협상에서 각 회원국은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씩 양보를 해야 한다. 한국, 일본 등이 심사지연 또는 의약품 승인과 관련된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조항¹¹⁾¹²⁾을 포기하고, 일본이 상품의 외관보호 조항을 철회하였으며, ASEAN은 집행 부분에서 일부 양보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호주와 중국도 각각 지리적 표시 분야, 상표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하였다.

10) Yu, Peter K., "The RCEP and Intellectual Property Normsetting in the Asia-Pacific",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 89(2017), pp. 99-100.

11) KOTRA, "GIP 17-006, ISBN 979-11-6097-404-1(95320), KOTRA, 2017.

12) "Medicines Sans Frontiers RCEP IP Chapter", 2016, pp. 2-3, pp. 23-24.

(2) 지식재산 협상 타결의 의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2021년 1월 우리 정부의 발표¹³⁾ 등으로 CPTP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기체결한 다자간 협정 RCEP과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공지에외, 국제특허분류 시스템 도입, 우선 심사 등을 의무조항이 아닌 확인조항 정도로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RCEP의 지식재산 장이 낮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지식재산 장이 없었던 한·ASEAN FTA, TRIPs 수준의 상표보호, TRIPs 수준의 미공개정보보호 정도만 규정한 한·베트남 FTA의 지식재산 장에 비하면, RCEP 지식재산 장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집행분야 등과 같이 세부항목을 마련하고,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부분디자인 도입 근거, 특허 출원 18개월 후 공개 등 조항을 포함한 기체결 FTA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협정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분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강조된 전자출원시스템 도입을 명시하는 등 최근 타결된 다자간 협정과 견주어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분야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내 출원인에게는 익숙한 특허출원 후 18개월 공개제도는 AFP의 제안으로 RCEP 통합협정문에 포함되었으나, ASEAN은 18개월 공개 의무화에 반대¹⁴⁾하였다. 2019년 9월 RCEP의 지식재산 장이 타결되는 시점에 베트남, 라오스는 출원 후 19개월에 특허를 공개하고, 캄보디아, 태국은 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RCEP은 이렇듯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TRIPs, 국제특허조약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나아가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강행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RCEP 협상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CPTPP 당사국으로, 비교적 CPTPP 문안에 대한 수용도

13) 청와대,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2021년 1월 11일.

14) "RCEP: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nd the Impact on Access to medicines", MSF RCEP IP Chapter Technical Analysis, 2016.

가 높았기 때문에 최종 합의된 RCEP 지식재산 협정문에는 CPTPP 문안이나 CPTPP와 유사한 문안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지식재산 장이 합의된 이후 RCEP으로부터 탈퇴한 인도의 흔적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 조항,¹⁵⁾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조항 등에¹⁶⁾ 남아 있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조항은 인도가 통합협정문에 포함시켰고, 협상기간 내내 협상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인도가 유전자원 조항에서 전혀 입장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기 곤란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처공개를 반대하던 한국, 일본, 호주¹⁷⁾ 등은 인도를 설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항에서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인도는 RCEP에서 탈퇴하여, 어떠한 이행의무도 없이 유전자원 관련 조항 및 그 외 조항에서 인도의 제도를 포함시키고 인도가 의도하는 대로 RCEP에 영향을 끼쳤다.

각국 국내법의 차이, TRIPs,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유사한 제도에 대하여 선호하는 서술방식의 차이, 국가정책이나 자국이익의 차이 등이 협상을 어렵게 하였고, 16개국의 다양한 차이점을 아우르기 위해 해석의 차이, 문안의 차이 등을 모두 주석을 통해 극복하고 합의하였다.

2. RCEP 산업재산권 조항에 포함된 협상국의 다양한 입장차

산업재산권 조항 문구에 포함된 주석, 협상과정, 조항별 합의 시기, 16개 협상국의 국내제도 등을 바탕으로 RCEP 산업재산권 조항 중 협상국 국내법이 상이하었던 사항, 국가별로 해석이 상이하었던 사항, 선호하는 표현이 상

15) RCEP 주석 22 등,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e quasi-judicial procedures.

16) 인도는 특히 18개월 공개(제11.44조 제3항)의 자국 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17)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31-33면.

이하였던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 협상국의 국내법 차이

호주 등 다수 협상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7월 제네바 개정)’에 미가입하였고, 가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디자인 보호기간(10년 또는 15년) 조항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최근 강한 디자인 보호 기조를 가진 일본¹⁸⁾과 한국 등은 마지막까지 보호기간 15년을 주장하였으나, 아직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나 그 제도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ASEAN은 TRIPs 제26조 제3항의 디자인 보호기간 10년을 주장하였다. 또한 호주는 2003년 개정을 통해 디자인 보호기간을 16년에서 10년¹⁹⁾으로 단축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결과²⁰⁾까지 얻은 바 있다. 따라서 호주 역시 디자인 보호기간 15년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국내법의 차이로 인하여 보호기간 15년은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1.49조)에서 제외되었고, ‘RCEP 당사국이 가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대상(제11.9조제3항)’에 디자인 보호기간 15년 등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규정한 헤이그 협정을 포함시키는 구조로 합의하였다.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제11.29조 내지 제11.35조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에 준사법절차(quasi-judicial procedure)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석 22, 29 등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RCEP에서 탈퇴한 인도의 국내법을 반영한 사항이다.

18) 일본은 2019년 의장법(우리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의장권(디자인권) 보호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일을 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하였다.

19) 창의적인 디자인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목적하에, 호주는 최소 국제적 의무(TRIPs)와 공공의 이익 간에 절충안을 모색하고, 디자인 보호기간을 축소하였다. 호주 정부, “디자인법”, 호주 법령정보,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da200391/>, 검색일: 2021년 3월 1일.

20) 호주정부, “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of the designs system options paper, 호주정부, 2014, p. 11, pp. 14-25, p. 42.

(2) 협상 국가별 해석의 차이

주석을 통해, 각 협상국이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용어에 대하여 국가별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협상국 전체 합의(Consensus)가 아닌 일부 국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증거이다.

유명상표보호규정(제11.26조) 주석 18에서는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서 ‘동일·유사’에 대한 “이 항의 목적상, 당사국은 ‘유명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을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취급할 수 있다.”²¹⁾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 상표법 제13조의 동일·유사 판단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중국은 호주 등이 동일과 유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사를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제27차 공식협상(2019년 7월 정저우)에서 동일과 유사에 대한 국내법에 명시된 자국 해석 방식을 포함시켰다.

(3) 단어의 차이

회원국은 특허 출원 후 18개월 내 공개(제11.44조) 규정에서 공개제외 가능 대상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표현을 결정하는데, TRIPs 제73조의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와 PCT 제27조의 “National Security”에서 입장을 달리하였다. 호주, 일본 등은 TRIPs 제73조의 표현을 제안하였으나, 인도와 ASEAN이 이를 반대하였다. 인도와 ASEAN은 PCT 제27조의 표현을 제안하였고, 호주는 이를 반대하였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내 절차(제11.30조 제1항 (내)회조항의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reasonable procedures and formalities) 논의 시 TRIPs 제42조의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절차 및 형식이 아닌 것(shall not impose overly burdensome requirement)과 TRIPs 제62조의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compliance

21)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the use of the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under this paragraph by providing its judicial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y to prohibit the use of such a trademark.

with reasonable procedure and formality) 등이 검토되었다. 인도는 ASEAN이 제안한 burdensome requirement를 반대하였고, 결국 국가 간 단어의 차이를 주석²⁴로 추가하고 합의되었다.

(4) 협상국의 관심 차이

인도, 태국 등 유전자원 제공국이 협상국으로 포함된 RCEP에는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규정할 수 있는 환경 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식재산 장에 유전자원 관련 조항(제11.53조)이 포함되었다. 인도²³는 2019년 9월 지식재산 장이 합의되는 시점까지 협상국이었고, 해당 조항을 지식재산 장에 포함하기 위하여 협상 초기부터 관련 문안을 제안하였다. 인도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유전자원 이용국가 간의 대립이 있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TRIPs 개정을 요구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이하 WIPO IGC)에서 지속적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특허등록 요건화할 것을 주장하는 인도, 중국, 태국 등은 RCEP 협상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²⁴ 유전자원 제공국은 유전자원의 해적행위를 금지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며, 유전자원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

22) 협상국은 이를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절차 및 형식이 아닌 것(be not overly burdensome procedures and formalities)’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WIPO, “Working Group on Refprm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PCT/WG/8/9, WIPO, (2006)”, “EPO, “PCT Minimum documentation Task force: Status Report”, PCT/WG/9/22, WIPO, 2016”, “EPO, “PCT Minimum documentation: Status Report”, PCT/WG/10/12, WIPO, 2017”,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13권 제4호(2018)”를 참조하면 인도는 WIPO PCT 실무그룹, IGC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특허 등록 요건화」와 「인도의 전통지식 관련 정보를 PCT 국제조사 시 활용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24) Sharma, Seemantani, “RCEP and Trans-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norms: Implications for India”,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22, issue 5-6(2019), p. 314, pp. 317-318, pp. 322-323.

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특허 등록 요건으로 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등 유전자원 이용국은 유전자원 관련 국제 논의에서와 같이, 유전자원은 생물다양성협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유전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등록 요건화를 통해 기대하는 사항들은 이미 생물다양성협정 및 나고야의정서를 통하여 이행되고 있으므로, 산업재산권인 특허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허 제도 내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요구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나 상호합의 제도 등이 미비한 현재 상태에서 유전자원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출원인의 부담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시급을 다투는 특허의 출원이 지연되며, 또한 출원인이 제출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출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특허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해당 요건을 출원인이 위반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오기재하여, 특허 등록 후 그 진위여부가 확인된 경우— 경우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등록 요건화를 반대하였다. 유전자원 이용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등록 요건화 대신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특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선행기술 검색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조항 논의 시 16개 협상국은 유전자원 Friend 팀과 그렇지 않은 팀²⁵⁾으로 구분되어 마지막 협상 이틀 간 4회 이상 그룹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전자원 Friend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절충안으로, 현재 제11.5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 특허제도의 일부로 유전자원의 출처 또는 근원의 공개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관련 법 및 절차를 온라인을 포함한 적절한 곳에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국들이 그 관련 법 및 절차를 인지할

25)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와 같이 “유전자원의 출처 또는 근원의 공개”를 특허제도로 규정한 당사국의 경우, 해당 절차, 법령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RCEP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주석²⁶⁾을 통하여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을 명시하였으나, 유전자원 제공국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특허제도 내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RCEP에 명시하였다.

(5) 협상국의 정책 차이

RCEP 협상국 중 7개국 CPTPP 당사국은 CPTPP수준의 조항을 찬성하고, CPTPP의 조항을 RCEP에 포함하여 그 외 국가에도 강제할 것을 기대하였다. 반면 CPTPP 회원국도 아니고, 높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CPTPP 문안을 RCEP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CPTPP 당사국이 아닌 RCEP 협상국의 반대로 인하여 예를 들어 도메인 네임 보호(제11.55조)조항은 CPTPP 제18.28조 제1항 (a)호는 동일하나 (b)호—도메인 네임 등록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online public access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는 삭제된 형태로 RCEP에 포함되었다.

2019년 의장법 개정 등을 진행하며 강한 디자인 보호 정책을 추구하는 일본은 디자인 심사 시 인터넷에 공지된 디자인도 선행기술로 활용할 것(제 11.50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사적체나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분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은 2019년 7월까지 합의되지 못하였고, 결국 주석 39²⁷⁾를 통하여 실제심사를 진행하는 국가와 실제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26) RCEP 제11장 제7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의 주석 41, 이 절은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와 같은 포럼을 통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한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도 저해하지 않는다.

2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자신의 행정당국이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국의 정책적 차이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문안이 구성되었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조항 논의 시 CPTPP 환경 장에 포함된 유사 조항²⁸⁾을 참조하고, 이를 지식재산권 장이 아닌 일반 협정문 조항 등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는 CPTPP 당사국인 가 또는 유전자원 제공국인가 등의 정책적 차이에서 온 결과이다.

3. RCEP 산업재산권 협상에서 CPTPP 협정문의 차용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CPTPP가 되면서 지식재산 장에서는 내국민 대우, 승인기관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조정 등 다수 조항이 동결²⁹⁾되었다. 동결조항은 협상 중 완전하게 삭제된 조항들과는 지위가 다른 것으로 협정문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고, 향후 미국이 CPTPP에 합류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CPTPP 회원국의 합의(Consensus)를 통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결조항도 CPTPP의 조항으로 포함하여 RCEP 지식재산 장에 반영된 CPTPP의 흔적을 살펴보겠다.

RCEP에는 CPTPP와 유사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RCEP 회원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CPTPP 국가라는 것과, 국내 제도의 차이, 자국 이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³⁰⁾을 포함한 상당 국가들이 합의한 조항이라는 것이 고려되었다.

상품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인³¹⁾지리적 표시의 경우, 보호대상인 지리적 표시를 양국 간 교환

28) [CPTPP Article 20.13] 4.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ithin their respective national jurisdictions, consistent with each Party's international obligations.

29)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preamble ANNEX.

30) 미국은 TPP에 포함되었다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TPP를 탈퇴하여 명칭이 CPTPP로 변경되었다.

31) 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64호(2020), 337면.

하는 리스트 교환방식³²⁾ 지리적 표시 보호를 선호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FTA를 통하여 리스트 방식으로 교환된 지리적 표시는 보호를 위하여 출원·등록 절차가 필요없다.³³⁾ 이에 대한 우려와 일본, 중국의 지리적 표시를 리스트 교환방식으로 보호해야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한 한국은 리스트 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조항을 RCEP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RCEP에서는 리스트 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조항이 제외³⁴⁾되고 CPTPP와 유사하게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각국 제도 운영, 동 제도의 투명성 제고, RCEP 협정 이전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의 합치를 위한 조항 등이 규정되었다.

소리상표와 관련된 RCEP 제11.19조 상표보호 규정의 후반부 —어떠한 당사자도 상표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않는다³⁵⁾—는 CPTPP 제18.18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표장의 유형 규정의 전반부와 동일하다.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보호 규정(RCEP 제11.20조, CPTPP 제18.19조)³⁶⁾은

32) 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64호(2020), 334면.

33) 이현희,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67호(2021), 372면, 373면, 381-390면.

34) Frankel, Sus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 *Geographical Indication at the Crossroads of Trade, Development, and Culture: Focus on Asia-Pacif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147-167.

35) No Party shall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of a trademark, that a sign be visually perceptible, nor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36) RCEP Article 11.20, CPTPP Article 18.19 :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include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A Party is not obligated to treat certification marks as a separate category in its laws [RCEP : and regulations], provided that those marks are protected.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that signs that may serve as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capable of protection under its trademark system [RCEP :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상표에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고, 증명표장을 국내법에 따라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으며,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하는 표지가 상표제도에 따라 보호됨을 규정한다. RCEP에서는 증명표장을 국내법 뿐 아니라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을 포함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였고,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의 보호에도 국내법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실질적으로 국내법은 규정을 포함하고, 각국의 상표제도는 당연히 자국법과 규정에 따르므로, 자국의 규정(and regulations)이나, 자국의 법과 규정(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단순한 부연 설명으로 실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상표의 예외규정(RCEP 제11.24조, CPTPP 제18.21조³⁷⁾)은 예외를 수식하는 지시어를 RCEP은 such로 CPTPP는 those로 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 및 such와 those를 제외한 문안은 동일하다. 국가명 보호 규정(RCEP 제11.57조, CPTPP 제18.29조³⁸⁾) 역시 “각 당사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로 RCEP과 CPTPP 문안이 동일하다.

산업 디자인 보호 중 특히 부분디자인에 관한 규정 RCEP 제11.49조 제5항은 부분디자인에 관한 CPTPP 제18.55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³⁹⁾ CPTPP 제18.55조 제1항은 산업디자인 보호 및 부분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

37) RCEP Article 11.24, CPTPP Article 18.21 : A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rights conferred by a trademark, such as fair use of descriptive terms, provided that [RCEP : such, CPTPP : those] exceptions take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and of third parties.

38) RCEP Article 11.57, CPTPP Article 18.29 :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ersons to prevent commercial use of the country name of a Party in relation to a good in a manner that misleads consumers as to the origin of that good.

39) Each Party [CPTPP : shall ensur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and also] confirms that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is available for designs (i) embodied in a part of an article; or, alternatively, (ii) having a particular regard, where appropriate, to a part of an article in the context of the article as a whol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로 구성되었고, 제18.55조 중 RCEP은 부분디자인에 관한 문구만 이용하여 합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상표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구제 형사구제와 관련된 집행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인 RCEP 제11.75조와 CPTPP 제18.71조⁴⁰⁾는 영어 문구⁴¹⁾만 다를 뿐,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듯 RCEP은 CPTPP의 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협상국의 합의를 끌어내었고, 그 결과 한·베트남 FTA, 한·중 FTA 등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던 CPTPP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보호 규정인 소리상표, 유명상표 판단기준, 특허공지에외, 부분디자인, 도메인 네임 보호, 국가명 보호 등을 포함시킬 수 있었으며, 기존 별도의 지식재산 장이 마련되지 못했던 한·ASEAN FTA에 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구분되고 높은 산업재산권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다.

Ⅲ. 산업재산권 관련 RCEP 조항과 의의

1. 상표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RCEP 제3절은 총 10개의 상표조항을 포함한다. 회원국에 따라 상표법 또는 독자적 제도(a sui generis system)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제4절로 분리하고 관련 조항 7개를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RCEP 제3절 상표와 제4절 지리적 표시 조항을 살펴보겠다. CPTPP는 세션 C(Session C)에서 11개 상표조

40) RCEP Article 11.75, CPTPP Article 18.71 : Each Party confirms that the enforcement procedures set [RCEP :out in Subsection 2 and Subsection 4, CPTPP : forth in Article 18.74, Article 18.75 and Article 18.77] shall be available to the same extent with respect to acts of [RCEP :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trademarks, CPTPP : trademark infringement, as well as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41) [RCEP]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trademarks, [CPTPP] trademark infringement, as well as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항을, 세션 E에서 8개 지리적 표시조항을 규정하였다.

(1) 상표에 관한 일반적 조항

RCEP의 제3절은 CPTPP 세션 C와 같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을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글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삼차원 형태와 색의 조합 및 그러한 표지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는데(제11.19조), 이는 TRIPs 제15조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에 ‘삼차원 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RCEP은 CPTPP, USMCA와 같이 상표범위에 소리상표(제11.19조),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제11.20조)을 포함시켰다. 한·미 FTA를 통해 소리상표와 증명표장을 국내 도입한 우리나라는 무리 없이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은 향후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의 가입을 의무화(제11.21조)하였다. 니스협정을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등 국가는 해당 협정 가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니스협정에 가입하였고, 1999년 1월부터 상표에서 니스 분류를 사용 중이다. RCEP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니스 분류에 익숙한 우리 출원인이 ASEAN 등 RCEP 역내에서 용이하게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호주 등의 제안으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채택)」 가입이 제11.9조 제2항에서 논의되었으나, 싱가포르 조약 미가입국인 중국, 인도의 반대로 당사국의 의무적 사항을 기재한 제11.9조 제2항에 포함되지 못하고, 가입이나 이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기재한 제11.9조 제3항으로 의무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포함시키고 합의되었다.

제11.23조는 TRIPs 제16조의 상표에 부여된 권리를 명시하여 TRIPs조약의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WTO 회원국이면 당연히 TRIPs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미준수 국가가 실제 있고, TRIPs를 재확인하는 규정을 개별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재산의 보호수준을 TRIPs 수준 또는 TRIPs 플러스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유명상표 보호에 있어서 유명상표의 조건으로 “등록이나 목록에 포함되는

것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11.26조 제3항은 CPTPP 제18.22조 제1항과 동일하며, 유명상표 판단기준 등을 명시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과 WIPO에서 채택한 유명상표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 관한 공동권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제11.26조 제2항은 CPTPP 제18.22조 제2항과 동일하다.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 취소 등을 하도록 규정한 제11.26조 제1항은 CPTPP 제18.22조 제4항⁴²⁾과 유사하고 다만 본문의 영어 표현의 차이⁴³⁾가 있고, 동일과 유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하였다. 제11.26조의 주석 19는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중국 주장으로 중국 상표법의 동일, 유사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였다.

상표등록의 거절이유를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제공하고, 출원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상표 등록 전 이의신청 및 등록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등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제11.22조)를 규정하였다.

상표의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악의적 상표(제11.27조)규정, 다수의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구성(제11.28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들은 최근 다자간 협정 CPTPP나 USMCA 등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출원인의 상표보호 강화 및 출원 편의를 위한 조항이다.

RCEP의 제3 및 제8절에 규정된 상표관련 규정은 상표보호기간(10년, 갱신 가능), 라이선서 비등록 규정을 제외한 CPTPP의 세션 C 상표 규정을 포함하였다.

RCEP 상표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법이나 기존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RCEP의 소리상표조항, 니스 분류조항, 악의적 상표조항 등은 향후 FTA 협정 시 상대국에 요구할 높은 수준의 조항이다. 다만

42) 후단부 “A Party may also provide such measures including in cases in which the subsequent trademark is likely to deceive”만 제외되었다.

43) [RCEP]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CPTPP]to refuse the application or cancel the registration.

TRIPs 등의 국제적 스탠더드 수준에서 합의된 유명상표 보호 등의 RCEP 규정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

제4절 지리적 표시에는 7개 조항으로 역내에서 상표제도, 독자적 제도 등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제11.29조 내지 제11.31조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투명성에 관련된 조항으로, CPTPP 세션 E의 지리적 표시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RCEP 제11.29조에서는 각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가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TRIPs 요건과 합치하여야 한다고 TRIPs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RCEP 역내 국민은 국가의 관여 없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출원을 RCEP 역내에서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명확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절차를 대중에 공개하고, 지리적 표시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보장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취소될 수 있다(제11.30조). 상표법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57조 출원공고, 제60조 이의신청과 대응되는 규정으로, 국내법 개정이 필요없다.

지리적 표시 보호 전 이의신청 및 보호 후 취소신청에 대한 근거—보호할 지리적 표시가 보통명사 또는 관용명사인 경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 최초 당사국에서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단된 경우—와 보통명사 및 관용명사 판단기준을 규정(제11.31조)하였다.

보호대상인 지리적 표시가 복합명사인 경우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명사는 보호되지 않고(제11.3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각국의 지리적 표시 출원일 또는 등록일 이전에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제11.33조).

RCEP 발효 후 당사국이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경우, 보호절차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보통명사 또는 관용명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제11.34조). 지리적 표시가 복합명사인 경우 개별 명사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협정

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96호)』 제6조 지리적 표시의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제7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 등으로 이미 국내에서 이행 중인 절차 및 이의제기 근거 등과 일치하며, 국내에서는 바로 이행 가능하다.

RCEP 발효 전 당사국이 체결된 국제협정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 경우에는 제11.34조 (가), (나)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리스트 교환방식, 상표법적 방식 또는 개별법적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등 서로 상이한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던 RCEP 협상국은 협상 개시 이후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2019년 4월 지리적 표시 관련 특별 세션에서 RCEP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CPTPP 세션 E 지리적 표시 규정을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1.3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절차는 CPTPP 제18.31조와 흡사한데, 예를 들어, 제1항 (나)호는 “합리적 절차와 형식(reasonable procedure and formalities)”이라고 하여 CPTPP의 “지나치게 부담을 지게 하는 형식 없이(without imposition of overly burdensome formalities)”와 차이가 있으나, RCEP의 주석 24, “당사국은 이 호의 목적상 합리적 절차 및 형식이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절차 및 형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⁴⁴⁾”를 통해 CPTPP와 실질 내용을 일치시켰다.

제11.32조에서는 복합명사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명사가 보통명사인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CPTPP의 제18.3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RCEP은 “보통명사를 당사국 내에서 관련 상품을 위한 보통명사(common name for the associated goo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보통명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였다.

제11.33조 지리적 표시 보호개시일 규정은 CPTPP 제18.35조의 세부 내용

44) The Parties understand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reasonable procedures and formalities may be considered to be not overly burdensome procedures and formalities.

및 구조와 유사하다. 제11.34조 국제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 제11.35조 체결된 국제협정에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 역시 CPTPP 제18.36조와 비교될 수 있는데, RCEP에서는 RCEP 체결 또는 비준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비준된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추가 나열하여 RCEP 당사국들이 이를 이행함에 곤란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는 16개국이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검토 중인, 국제협정이 모두 상이할 수 있고, 이를 모두 고려한 결과로서, 다자간 협상의 결과물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RCEP의 지리적 표시 관련 조항을 이미 모두 제도화하였고,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없다. 오히려 RCEP의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통하여 RCEP 당사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감시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11.34조, 제11.35조에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의 범위를 WIPO 등에서 관장하는 조약 정도만을 포함할지 CPTPP와 같은 국가 간의 협정을 포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FTA 역시 국가 간의 협정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본 협정은 한·칠레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캐나다 FTA, 한·영 FTA를 통해 리스트 교환방식으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도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CEP의 지리적 표시 조항은 향후 FTA 협상 시, 상대국이 리스트 교환방식을 주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우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특허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1) 특허 관련 조항

특허에 관한 제5절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가능대상, RCEP 지식재산 관련 조항과 TRIPs 제31조, 제31조의2와의 관계 규정, 특허권에 부여되는 권리, 특허의 심사·등록 절차, 공지에외, 특허공개 등 12개조로 구성되었다.

RCEP은 제11.36조 제3항 (가), (나)호에서 특허제외대상을 명시하고 그럼에도 식물품종은 보호한다고 (나)호에서 규정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TRIPs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CPTPP 제18.37조 제3항 (a), (b)호 및 제4항의 내용과도 동일하다. 여기서 규정된 특허가 불가능한 사안들은 각 회원국이 특허가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의 치료방법 등은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일본 또한 동물의 치료방법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을 허용한다.

제11.37조 특허에 부여된 독점배타적 권리는 TRIPs 제28조와 동일하다. 이렇듯 산업재산 협정문 여러 곳에 TRIPs를 재확인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상당 협상국들이 TRIPs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해당 조항들을 통하여 RCEP협상국들이 TRIPs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TRIPs 위반 뿐 아니라 RCEP 규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WTO회원국인 RCEP 협상국은 공식적으로 TRIPs를 모두 준수한다고 외부에 선언하는 바, 이러한 TRIPs를 재확인하는 조항들은 RCEP의 비교적 협상 초기에 합의되었다.

호주, 일본, 한국 등은 CPTPP 제18.38조와 유사하게 특허 출원 전 12개월까지 출원인 뿐 아니라 출원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에게 의한 공지를 신규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지에외 기간과 공지에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⁴⁵⁾하였다. ASEAN은 공지에외기간 12개월을 반대하였고, 중국⁴⁶⁾은 공지에외기간 6개월과 공지에외대상을 국가가 인정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호주 등 공지에외 12개월을 주장하는 국가는 CPTPP 조문을 활용하여 해당 제도가 자국의 출원인에게 유익한 제도⁴⁷⁾임을

45) Sharma, Seemantani, "RCEP and Trans-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Norms: Implications for India",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22 Issue 5/6 (2019), p. 324.

46) 중국 특허법 제24조, 출원 전 6개월 내, 정부가 주최 또는 인정한 국제박람회의 전시, 규정된 학술회의 및 기술회의에서의 발표, 타인이 출원인의 허가없이 누설한 경우에만 공지에외가 인정되었다.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 ASEAN을 설득하였으나, 2019년 6월에서야 공지에의기간과 조건을 삭제하고, 의무 수준을 낮춘 형태로 합의하였다. 다만, 공지에의기간과 관련된 당사국 간 협조를 제11절 협력·협의를 당사국 의무 규정(제11.76조 제9항)을 포함시켰다.

실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의 예외로 하는 규정(제11.40조)을 포함하여, RCEP 역내에서 실험의 목적으로는 특정 특허와 관련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와 동일한 사항이다.

특허 거절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절차, 보정과 의견제출의 기회, 특허 등록 전 의견이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보장하는 특허출원절차(제11.41조)를 규정하였다.

특허 우선 심사 조항(제11.46조)은 중국에 의하여 제안⁴⁸⁾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은 비록 개별적인 우선 심사 대상은 상이하지만, 우선 심사 제도가 있고,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ASEAN은 우선 심사 규정이 없다.⁴⁹⁾ 일본과 우리나라 등은 ASEAN 국가에서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해외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해당조항의 강제화를 주장하였으나, 심사부담 및 법개정 부담을 느낀 ASEAN 국가들로 인하여, “당사자는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 출원의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 부르그 협정」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제11.47조)으로 합의되었다.

비록 우선 심사와 국제특허분류 도입을 의무화 하지는 못하였으나, 노력하는 수준(shall endeavour to)까지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FTA에서는 의무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7) 홍정표, “공지에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 37면, 39-41면.

48) Sharma, Seemantani, *ibid.*, p. 320, p. 337.

49) 이현희, 문병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검토”, 『ISSUE& FOCUS on IP』, (2015년 11월), pp. 8-12.

일본과 한국의 제안으로 CPTPP 제18.46조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18.48조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이 통합협정문에 포함⁵⁰⁾되었으나, 심사 적체가 심하고, 의약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동 조항을 제안한 일본과 한국은 2017년 동 조항을 철회⁵¹⁾하였다.

비록 CPTPP에 비해서는 의약품 관련 조항 등이 빠져 있으나 한·ASEAN FTA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특히 특허 출원 18개월 후 특허 공개를 국내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당수 ASEAN 국가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출원인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2)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조항

유전자원 보호 규정을 지식재산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인도, 중국 등이 협상국에 포함된 점, RCEP 내 별도의 환경 관련된 장이 없는 점으로 인하여, RCEP은 지식재산권 장에 유전자원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였다. 협상 초기부터 통합협정문에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등록 요건화 하는 인도의 제안 문안이 포함되었으나, 협상국 간 국내법 및 이해관계 차이로 7년의 협상 기간 내내 합의되지 못하고 결국 지식재산권 장 전체 조항 중 가장 마지막에 합의되었다.

최종 조항에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 요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입장을 주석⁵²⁾을 통하여 반영하였으나, 유전자원 이용국들이 국제조약 또는 양자·다자간 FTA협정에서 보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

50) Sharma, Seemantani, *ibid.*, pp. 320-321.

51) 「KOTRA, GIP 17-006, ISBN 979-11-6097-404-1(95320), 2017년 11월」, 「Medicines Sans Frontiers RCEP IP Chapter, 2016년 11월」 등에 따르면 2016년 및 2017년 논의 중이었던 지식재산 장에는 한국 등이 제안한 존속기간 연장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협정문에서는 제외되었다.

52) 주석 4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정부 간 위원회와 같은 모든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의, 어떠한 당사국의 유정자원, 정통지식 및 민간 전통물에 대한 입장도 저해하지 않는다.

장을 많이 수용하면서 비로소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제11.53조에서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마련(제1항),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특허 등록 기준으로 하는 규정(법·규칙)의 투명한 공개(제2항),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활용, 제3자에 의한 유전자원 관련 내용의 정보제공,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 관련 선행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특허심사제도의 운영(제3항) 등 3개 항을 포함하였다. RCEP 회원국은 제11.1장 지식재산권 목적에서 각국의 상이한 법 제도와 투명한 제도 운영, 정보 보급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1.53조 제1항에서 각국이 국제협약의 의무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장의 주석 42⁵³⁾으로 이것이 각국의 재량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제1항은 호주·ASEAN·뉴질랜드 FTA(Australia ASEAN New Zealand FTA, 이하 AANZFTA) 지식재산권 장 제13.8조와 유사하다. 인도가 제안한 유전자원 관련 조항에 대하여 RCEP 협상국가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의장은 CPTPP 환경 관련 장의 조항에 준하는 형태로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제안하였다. 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RCEP 회원국 중 12개국⁵⁴⁾이 당사국인 AANZFTA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뉴질랜드와 호주가 제안한 ANNZFTA 조항도 포함되었다. 제11.53조 제2항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 등록 요건화하고 있는 국가만을 한정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의 제안을 RCEP 협상국이 수용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은 보다 강한 의무화를 주장하였으나,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제도 하에서 요구 중인 국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제11.53조 제3항에서는 유전자원과 관

5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그러한 “적절한 조치”는 각 당사국이 결정할 사안이며, 반드시 자국 지식재산 제도 내에 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54) 호주, 뉴질랜드, ASEAN(10개국).

련된 정보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유전자원 이용국이 유전자원의 특허등록 요건화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안하였던 문안으로, 의장이 CPTPP조항을 참조하여 구성한 검토안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내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RCEP 유전자원 관련된 조항의 제1항, 제3항만 준수하면 충분하다.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등을 포함한 한국전통지식포털을 구축하여, 대중에 공개하고 특허 심사 시 심사관이 이를 선행문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허법 제 63조의2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당 특허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경우 제3자에 의한 관련 선행기술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RCEP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지식재산권 장에 유전자원의 출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고, 특히 특허제도 하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등록의 요건화하도록 하여, WIPO-IGC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전적으로 협상 기간 내내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등록 요건화할 것을 주장한 인도로 인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원 제공국들이 향후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RCEP 당사국들의 해당 조항 이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국제적 논의를 살펴본 후 향후 유전자원 제공국과의 FTA 협상 시 지식재산권 장을 협상대상에 포함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디자인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정 등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디자인은 조항이 적다. RCEP에서도 특허, 상표에 비하여 디자인은 조항

수가 적다. RCEP 제6절 산업디자인은 부분디자인의 보호규정,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의 선행기술로의 활용, 전자출원시스템, 국제분류시스템 도입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부분디자인과 헤이그시스템 등 해외에서의 IP확보를 위한 노력 조항만을 포함한 CPTPP의 산업디자인절(2개 조)보다는 양적, 질적으로도 우수한 결과이다.

RCEP 제11.49조 제1 내지 4항은 TRIPs 제25조, 제26조 제1, 2항과 동일한데, CPTPP 제18.55조 제2항 역시 TRIPs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RCEP은 TRIPs 제26조 제3항 보호기간 10년을 제외하고 CPTPP규정과 동일하다. RCEP에서는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보호기간을 확대한 일본 및 TRIPs보다 긴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한국 등이 디자인 보호기간 15년을 주장하였으나, ASEAN 및 호주의 반대로 디자인 보호기간 15년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한국, 일본, EU등에서만 도입하고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도입하지 않은 부분디자인⁵⁵⁾은 CPTPP 회원국의 영향으로 RCEP에 도입될 수 있었다. 부분디자인에 관한 제11.49조 제5항은 CPTPP 제18.55조 제1항과 “각국 국내법과 규칙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a regulations)”라는 부연설명을 제외한 부분이 동일하다.

RCEP은 또한 CPTPP 또는 USMCA와 같은 최근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에서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문헌(제11.50조)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해외에서 선점하여 디자인을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들었다. 비록 해당 조항은 Recognize 수준으로 의무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각국 특허청의 업무부담과 특허청의 책임 등을 이유로 디자인 심사 시 선행기술 문헌의 범위를 국내 출원 공개된 디자인으로 한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고려할 때 디자인 출원 보호를 위해 상당히 진보된 조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RCEP의 동 조항을 바탕으로 다음 FTA협상에서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다(rec-

55) 진선태,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2015), 101면.

ognize)”를 “선행기술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shall endeavour to)” 또는 “선행기술로 활용해야한다(shall)”로 의무수준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출원 절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11.51조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제공하고, 출원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하였다. 다만 전자 출원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낀 회원국으로 인해, 거절이유를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가능한 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CPTPP나 USMCA는 포함되지 않은 출원인이 디자인에 대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디자인의 등록 또는 승인 거절에 대하여 항변, 이의신청 또는 불복을 청구할 기회(contest, challenge, or appeal a refusal to register or grant an industrial design)를 보장하고, 등록이나 승인의 취소(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or grant), 무효화(invalidation of a registration or grant) 또는 철회(revocation of a registration or grant)를 구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취소, 무효화 또는 철회 절차의 행정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함을 규정하였다[RCEP 제11.51조 제(b), (c), (d)항].

산업디자인을 위한 국제분류 계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과 합치하는 산업디자인 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였다(제11.52조).

이렇듯, 비록 강제화하지는 못하였지만, ASEAN 국가 등에서 도입되지 않은 부분디자인, 로카르노 분류 등을 포함하고, 디자인 출원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하여, 향후 FTA에선 이를 보다 강제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소 결

RCEP 지식재산 협정문의 내용은 ① TRIPs,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인하는 조항, ② TRIPs 플러스 조항, ③ TRIPs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 ④ 각국의 제도적 차이를 조화시키거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고 이는 (i) 문구의 차이(Drafting/

Technical)가 존재하는 조항, (ii) 정책적 차이(Policy Divergence)가 있는 조항, (iii) 정책적으로 민감(Policy Sensitive)한 조항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①의 내용은 대부분 (i)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교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용이하였다. 이는 협상당국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로 해당 조항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향후 타 FTA의 협정문에 용이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협상 상대국이 이미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삭제시킬 수도 있다.

②의 규정은 TRIPs 또는 CPTPP 등 타 조문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일부분을 수정하여 TRIPs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합의를 도출한 사례이다. 16개국 협상 시 TRIPs, CPTPP, ANNZFTA 등 타 협정문의 관련 문안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상대국의 수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 협정문에서 일부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TRIPs 플러스 문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이용하여 CPTPP 문안을 활용하여, 향후에는 RCEP의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조항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타 FTA 협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유명상표보호 규정의 문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악의적 상표 출원 금지와 같은 ③의 규정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수용도가 낮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경우 논리적으로 그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미 RCEP에 해당 조항들이 포함된다, RCEP 협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재협상할 경우 이러한 조항의 삽입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조항 삽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리스트 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또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으로 요구하는 것 등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문안이다.

한국은 한·EU FTA와 한·미 FTA를 거치면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국 주도에 의해 리스트 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허가·특허 연계 제도, 소리상

표, 냄새상표 등을 지식재산 협정문에 포함하였고,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국내에 마련하였다.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갖추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금지, 특허 출원 18개월 후 공개제도,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부분 디자인 보호, 유명상표 보호 등 대부분 조항을 주도적으로 RCEP 통합협정문에 제안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CEP은 CPTPP 등 최근 다자간 협정문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RCEP 협상국과 개별 FTA를 추진할 경우 RCEP의 조항을 바탕으로 그보다 높은 수준의 조항을 요청할 수 있고, RCEP 협상국 외 국가와 FTA를 진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최소한 RCEP과 유사한 수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IV. 기타 RCEP 조항의 의의

1.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조항의 특징 및 의의

RCEP은 산업재산권 외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별도의 절(제8절)을 두고 4개 조항을 규정하였다.

제11.54조에서는 부정경쟁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10조의2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RCEP 협상국은 모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동협약 제10조의2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RCEP 협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RCEP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10조의2 등을 준수한다.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제11.55조에 규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로써 공정·공평하고,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악의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CPTPP의 제18.28조, USMCA 제20.27조—제20.27조 제1항(a)(iv) 부분인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연락처 정보 마련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와 동일하다. RCEP 역내에서 악의의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을 등록·보유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RCEP 제11.55조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년 6월 9일)」로 이행한다. 특히 제12조 등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을 금지하고 있다

TRIPs 제39조 제2항에 따른 미공개 정보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도록 규정(제11.56조)하였다. RCEP 당사국은 TRIPs 제39조 제2항에 따라, 미공개 정보⁵⁶⁾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미공개 정보의 정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 보호 위반 시 이를 규제하는 형사절차 등을 규정한 CPTPP 제18.78조나, USMCA 제20.69조 내지 제20.77조에 비하면 미공개 정보의 정의와 보호정도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RCEP 협상국과 체결한 한·베 FTA, 한·ASEAN FTA 등에 비하면 미공개 정보라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CPTPP 및 USMCA 조항과 유사하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갈 근거를 마련하였다.

뉴질랜드 제안으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국가 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11.57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는 CPTPP 제18.29조, USMCA 제20.28조와 동일한 규정이다. 이는 최근 등장한 규정으로 RCEP을 통해서 CPTPP, USMCA와 같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국가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RCEP은 CPTPP 및 USMCA와 유사하게 부정경쟁의 정의, 도메인 이름 보

56) TRIPs 제39조 제2항은 미공개 정보의 조건으로 해당 정보가 업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적법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제시하였다.

호, 미공개정보 보호, 국가 명칭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비록 미공개 정보 부분에서는 CPTPP 및 USMCA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으나, 향후 중국이나 ASEAN에 높은 수준의 미공개 정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2. 제도규정 장의 지식재산권 위원회 조항의 의의

한·중 FTA, 한·EU FTA⁵⁷⁾와 같은 FTA는 지식재산 협정문 조항의 이행을 검토하는 지식재산권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빈도를 지식재산 장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RCEP은 제18장 제도규정 장에서 RCEP을 운영하기 위한 각 분과의 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RCEP 공동위원회는 년1회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방식으로 진행되고 지식재산 협정문의 이행과 운영, 개정, 해석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서 RCEP가 발효된 후, 협정문을 근거로 각국에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V. 마치며

향후 FTA 협정은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협력과 RCEP를 바탕으로 RCEP와 동일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FTA 협상 추진이라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RCEP 공동임시위원회⁵⁸⁾(RCEP 제18장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1회/년 개최되어야 하나, 발효

57) 한·중 FTA 제15.31조, 한·EU FTA 제10.25조, 제10.69조 제2항, 한·싱 FTA 제17.9조, 한·호 FTA 제13.12조, 한·캐 FTA 제16.18조, 한·중미 FTA 제15.17조 등을 통해 각각 지식재산 장 내에 지식재산권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58) 산업통상자원부, 「RCEP 제1차 공동임시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년 12월 15일자.

전으로 공동임시위원회라 명명)를 통해 회원국과 RCEP의 각국 비준·이행 등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국은 긴 협상의 결과물이 조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RCEP 협상국에서의 RCEP 비준을 독려할 것이다. RCEP는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非)ASEAN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적으로 비준을 하고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경우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되며, 단 그 영역은 비준을 한 국가에 한정되는데 현재(2021년 6월)까지 비준국은 없다.

다음으로 FTA 추가협상 측면에서,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통상협상을 진행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17개 FTA가 발효되었고, RCEP를 포함한 4개 FTA가 서명 또는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MERCOSUR TA, 한·우즈베키스탄 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한·에콰도르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한·필 FTA, 한·러 FTA, 한·말레이시아 FTA⁵⁹⁾ 등이 진행 중이다. 호주,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와는 2개의 FTA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3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FTA의 기본 협정문에는 살펴본 CPTPP와 유사한 수준의 RCEP 산업재산권 조항 또는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인 RCEP 산업재산권 조항이 협상의 기본 통합협정문에 포함될 것이다.

CPTPP와 유사 또는 동일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소리상표 등 상표로 보호 가능한 대상, 단체표장·증명표장 도입, 상표권에 부여되는 권리, 상표권의 예외,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전자 상표출원제도 도입 의무, 니스 상표분류 도입, 지리적 표시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규정, 복합명사로 구성된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RCEP의 관계

59) 한·에콰도르 SECA, 한·필 FTA, 한·러 FTA, 한·말레이시아 FTA에는 지식재산 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 특허: 특허 권리자의 권한 없는 사용, 특허 출원 18개월 후 공지 의무, 유전자원·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조항
- 디자인: 부분디자인조항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인 RCEP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악의적 상표출원 및 등록 금지, 복수 상품·서비스군 일상표출원, 상표권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보다 앞선 상표의 보호
- 특허: 특허의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특허의 실험적 사용, 등록 절차, 심사 시 인터넷에 공지된 문헌 활용, 우선 심사, 국제특허분류시스템 도입
- 디자인: 디자인 출원 심사 시 인터넷에 공지된 기술 이용, 디자인 출원 절차, 로카르노 분류시스템 도입

특히 우리나라가 약세에 있는 리스트 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조항이나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항을 대신하여 RCEP의 지리적 표시 출원 절차 조항이나, 특허제도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요구하는 나라에만 이를 의무화하거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선행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출원시스템,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분류 도입, RCEP에만 포함된 악의적 상표 출원 금지 등은 우리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국내)〉

- 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64호(2020).
-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 이현희,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67호(2021).
- _____, 문병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검토”, 『ISSUE & FOCUSE on IP』(2015).
- 진선태,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2015).
- 홍정표, “공지예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

〈학술지(서양)〉

- Sharma, Seemantani, “RCEP and Trans-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Norms: Implications for india”,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 22 Issue 5/6, (2019).
- Yu, Peter K., “The RCEP and Intellectual Property Normsetting in the Asia-Pacific”,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 89(2017).

〈단행본(서양)〉

- Frankel, Sus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 *Geographical Indication at the Crossroads of Trade, Development, and Culture: Focus on Asia-Pacif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신문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RCEP 제1차 공동임시위원회 개최」, 2020년 12월 15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41>>.
- 청와대,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2021년 1월 1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463>>.

〈인터넷 자료〉

호주정부, “디자인법”, 호주법령정보사이트,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da200391/〉, 검색일: 2021년 3월 1일.

〈기타 자료〉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in 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preamble ANNEX”.

“RCEP :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nd the Impact on Access to medicines”, MSF RCEP IP Chapter Technical Analysis, 2016.

EPO, “PCT Minimum documentation Task force: Status Report”, PCT/WG/9/22, WIPO, 2016.

EPO, “PCT Minimum documentation: Status Report”, PCT/WG/10/12, WIPO, 2017.

KOTRA, “GIP 17-006, ISBN 979-11-6097-404-1(95320)”, KOTRA, 2017.

WIPO, “Working Group on Refprm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PCT/WG/8/9, WIPO, 2006.

호주 정부, “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of the designs system options paper, 호주 정부, 2014.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n RCEP, Focusing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Choi, Kyosook

RCEP is the agreement between ASEAN and AFP. RCEP began the first Trade Negotiation Committee(TNC) in 2013 and concluded in 2020 with 54 official meetings(TNC, ministerial meetings, etc.). It was the first multilateral FTA joined by the Republic of Korea(ROK), consisting of 20 chapters which also included IPRs, etc.

The Working Group of Intellectual Property(WGIP) classified the articles of IP into three categories: divergence in drafting; divergence of policy; sensitivity of policy. The WGIP concluded on 83 articles on IPRs. The agreement allows us to identify differences among 16 Parties in domestic laws, policies, and preferred narratives and also apply CPTPP articles.

Regarding industrial property, there are 10 articles on trademarks, seven on GIs, 12 on patents, and 4 on designs.

RCEP's IP Chapter contains articles with the same or similar level of obligation as the CPTPP (e.g. sound trademark,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s, registration and applications of trademarks, rights conferred, exceptions, GI, generic source and traditional knowledge, etc.) and a higher level of IP protection that is not included in CPTPP (e.g. bad faith trademark, information as prior art disclosed on the internet, etc.). The ROK can use the

RCEP clause as an integrated agreement when carrying out future FTAs.

Keyword

RCEP, Industrial Property, Generic source and traditional knowledge, patent, trademark, design